

# 서울장학재단 2020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분야1.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		4항목	21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인권존중 정책선언	1	재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정책선언을 했다.	○					
	2	인권정책선언은 재단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.	○					
	3	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 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.	○					
	4	재단의 인권정책선언은 재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.	○					
	5	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,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.	○					
	6	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.	○					
	소 계		6					
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	1	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	
	2	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.	○					
	3	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재단 내·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.	○					
	4	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.	○					
	5	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.	○					
	소 계		5					
항목	지표		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	1	재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.	○					
	2	재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주관부서를 둔다.	○					
	3	재단은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마련했다.	○					
	4	재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	○					
	소 계		4					

구제절차 마련	1	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.	○				
	2	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.	○				
	3	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.	○				
	4	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한다.	○				
	5	피해자가 회사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.	○				
	6	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,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.	○				
	소 계			6			
총 계			21	0	0	0	0

분야2. 고용상의 비차별		3항목	14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고용상의 비차별	1	재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(나라)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		○				
	2	재단은 노동자 모집·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.		○				
	3	재단은 임금 외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	○				

고용상의 비차별	4	재단은 노동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	5	재단은 노동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소 계			5				
항목	지표	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고용상 남녀비차별	1	재단은 노동자를 모집·채용 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.	○				
	2	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.	○				
	3	재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	4	재단은 노동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	5	재단은 노동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

고용상 남녀비차별	6	재단은 여성노동자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.	○				
	소 계		6				
항목	지표	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	1	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.	○				
	2	재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재단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	○				
	3	재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.	○				
	소 계		3				
총 계			14	0	0	0	0

분야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	2항목	9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결사단체 교섭의 자유	1	재단은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모임의 설립이나 개최를 허용한다.		○				
	2	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		○				
	3	재단은 노동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.		○				
	4	재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		○				
	소 계			4				
노동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	1	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						○
	2	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.						○
	3	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.						○
	4	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						○
	5	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.						○
소 계								5
총 계				4	0	0	0	5

분야4. 강제 노동의 금지		1항목	6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강제노동 금지	1	재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.		○				
	2	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,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		○				
	3	재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.		○				
	4	재단은 노동자를 폭행, 협박,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.		○				
	5	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을 떠날 수 있다.		○				
	6	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다.		○				
소 계			6					
총 계				6	0	0	0	0

분야5. 아동 노동의 금지			1항목	1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	
연소자 고용 금지	1	재단은 만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	○						
	소 계		1						
총 계			1	0	0	0	0	0	

분야6. 산업안전 보장			4항목	9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	
사무실 안전	1	재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,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.	○						
	2	재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, 조명, 음용수, 세면대, 의자, 작업복, 음식보관시설,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.	○						
	소 계		2						
임산부 등 보호	1	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지 않는다.	○						
	2	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지 않는다.	○						
	3	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.	○						
	소 계		3						
건강진단 실시	1	재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	○						
	2	재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	○						
	소 계		2						
비상계획 수립	1	재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		
	2	재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, 관련당국,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.	○						
	소 계		2						
총 계			9	0	0	0	0	0	

분야7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	1항목	3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협력사 등의 인권침해예방	1	재단은 공급업자, 하청업자, 자회사,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.		○				
	2	재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.		○				
	3	재단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·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.		○				
	소 계			3				
총 계				3	0	0	0	0

분야8. 환경권 보장		1항목	2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환경 관리	1	재단은 환경을 위해 사무실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.		○				
	2	재단은 행사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.		○				
	소 계			2				
총 계				2	0	0	0	0

분야9. 이용자 인권 보호		2항목	11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	1	재단은 사업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·광고를 할 때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하지 않는다.		○				
	2	재단은 제공하는 사업과 지원 금액, 지원 조건 등을 포함하여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.		○				
	3	사업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,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.		○				
	4	재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.		○				
	5	모든 창작물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		○				
	소 계			5				
항목	지표		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이용자 개인정보 보호	1	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, 재단이 수집·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		○				
	2	이용자 정보 보호의 수립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, 공개되어 있다.		○				
	3	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, 공개되어 있다.		○				

이용자 개인정보 보호	4	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며,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.	○				
	5	이용자 정보는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	○				
	6	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.	○				
	소 계		6				
총 계			11	0	0	0	0

분야10. 직원의 인권보호		3항목	9개 지표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
항목	지표							
직장 내 괴롭힘 방지	1	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	○					
	2	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.	○					
	3	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, 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 그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.	○					
	소 계		3					
성희롱·성폭력 예방 조치	1	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.	○					
	2	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.	○					
	3	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.	○					
	소 계		3					
항목	지표		예	보완 필요	아니오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일·생활 균형	1	재단은 관련법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한다.	○					
	2	재단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.	○					
	3	재단은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	○					
	소 계		3					
총 계			9	0	0	0	0	